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II. 검토의견

1.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장 및 교직원의 민사상·형사상 책임 면제(안 제10조제5항 신설)

안 제10조제5항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어떤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지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책임 면제 대

상으로 규정한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 또한 그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책임 면제의 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6호1)에서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 관리 지침 등) ① ~ ④ (생략) <신설>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 관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 관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u> ----- ----- <u>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u> ----- -----.

-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법무부는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해 노력한 학교장과 교직원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과 같이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부정되거나 「형법」상 정당행위²⁾에 해당할 것이므로 별도 규정을 둘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안 제10조의4 신설)

안 제10조의4에서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항), 교육감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제2항),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1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가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 법문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로 규정을 보완하고, 이 법에서는 ‘보조인력’의 정의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으로 그 명칭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2)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 제10조의4제3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규정될 사항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임 대상을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으로 명확
 히 하는 등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 설>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 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학교 밖 교육활동</u> <u>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u> <u>을 배치</u> 할 수 있다.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 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 ----- ----- ----- <u>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u> <u>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u> <u>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u> <u>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u> <u>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u> <u>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u> <u>치</u> -----.
	③ <u>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u> <u>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u> <u>의 조례로 정한다.</u>	③ <u>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u> <u>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u>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화 실)